

제303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
[2024. 4. 30.(화) 10:00]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4. 4. 30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년 4월 30일

전문위원 장 석 현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: 2024 - 40

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
다. 제출일자: 2024년 4월 15일

라. 회부일자: 2024년 4월 23일

2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」 지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내 비품의 금액기준을 상향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3. 주요내용

안 제59조 관련 [별표 2] ‘물품의 품종·상태구분’ 중 비품의 취득 단가를 “10만원” 에서 “50만원” 으로 변경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59조(물품의 분류)
- 2) 「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」(행정안전부 지침)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4. 2. 28.~ 3. 19.) 결과: 의견 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
- 3) 규제사전심사: 해당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인 「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」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내 비품의 금액 기준을 상향시키고자 하는 것임
- 현재 안 제59조 별표2에서 비품의 취득단가는 10만원 이상의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되어있음. 이는 비현실적인 비품 취득단가로 실효성 있는 물품 관리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
- 또한, 비품¹⁾의 금액 기준이 상향될 시, 구매 절차가 비교적 쉬운 소모품²⁾의 취득단가 기준도 높아지므로, 소모성 물품 취득에 있어 폭넓은 선택이 가능해지는 등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
-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비품 취득단가를 5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,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재물조사와 물품관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

1) 비품 구매 절차 : 예산 편성, 구매 요청, 구매 계약 체결, 구매 및 배송, 검수 및 인수, 회계 처리 등의 단계를 거쳐 구매

2) 소모품 구매 절차 : 회계부서를 거치지 않고 수요부서에서 직접 구매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94조의2(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·처분·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·처분·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·운영할 수 있다.

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

제59조(물품의 분류) 물품의 품종·상태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.

[별표2] 물품의 품종·상태구분

2. 품종구분 기준

가. 비품

- (1)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이고,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
- (2)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

나. 소모품

- (1)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(예: 약품, 유류, 수선용 재료 등)
- (2)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(예: 시험용품, 사무용품, 공구 등)
- (3) 다른 물품의 수리, 완성제작(생산)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(예: 수리용 부속품, 생산원료, 재료 등)

□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

1) 소모품

○ 소모품의 정의

-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과 같이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
-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

○ 소모품의 종류

-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, 유류 등
-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, 사무용 소모품, 공구 등
- 다른 물품을 수립·조립·제작(생산)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, 생산원료, 재료, 건축자재 등
-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
※ 단, 내용연수(조달청고시, 제2021-41호)의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어 있는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관리 (예: 휴대전화기 등)

2) 비소모품

- 사무용 집기·비품·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
 - 취득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
- 단,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 (예 : 50만원)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